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국회 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 2006년 11월 17일)

1. 근무 경력 무시한 수석전문위원 인사, 국회 전문성 우려

- 수석전문위원 상임위 발령 시 해당 상임위 무경력 73.7%

2.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개발비 기준은 나 몰라라

- 4년간 정책연구개발비 22억원 집행근거도 없이 무작정 집행

3. 국회 사무처·도서관, 전보제한기간 명시된 규칙 무시하고

3년간 총 45명 인사 단행

4. 직원 출근 가로막고, 민원인 내쫓고

국회 등록 차량의 62.9%만 주차할 수 있는 국회 주차장

5.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사·분석한 자료는 공개가 원칙이다

**근무 경력 무시한 수석전문위원 인사, 국회 전문성 우려**  
**- 수석전문위원 상임위 발령 시 해당 상임위 무경력 73.7% -**

□ 문제점 & 질의

-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상임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소관의안에 대한 조사·예비심사·검토보고를 작성하고 ▲상임위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 핵심보직으로, 해당 상임위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전문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함.
- 그러나 본 의원이 국회 19개 상임위에 근무하고 있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상임위 발령 시 해당상임위 근무경력이 전무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수석전문위원’의 상임위 발령 시, 해당 상임위의 경력이 없는 무경력자가 재직 중인 상임위는 19개 상임위 중 14개 상임위(14명)로 7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상임위 발령 시**

**해당 상임위 경험 유무 현황 I**

구 분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해당 상임위 경험 有	5개 상임위 (26.3%)	10개 상임위 (52.6%)
해당 상임위 경험 無	14개 상임위 (73.7%)	9개 상임위 (47.4%)
합 계	19개 상임위	19개 상임위

(자료출처 : 2006년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아울러 ▲‘전문위원’의 상임위 발령 시, 해당 상임위의 경력이 없는 무경력자가 재직 중인 상임위는 19개 상임위 중 9개 상임위(10명)로 4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더욱 놀라운 것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모두 해당 상임위 경력이 없음에도 발령을 받은 것이 19개 상임위 중 6개 상임위(6명)로 3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2>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발령 시 해당상임위 경험 유무 현황 II**

구 분	현 황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모두 발령시 해당 상임위 경험 없음(無)	6개 상임위 (31.6%)
합 계	19개 상임위

(자료출처 : 2006년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 제출 자료)

- 본 의원은 국회 상임위의 핵심보직인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인사에서 해당상임위 근무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행태는 국회의 전문성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무총장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기준이 무엇이고, 인사에서 중요기준인 근무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개발비 기준은 나 몰라라 4년간 정책연구개발비 22억원 집행근거도 없이 무작정 집행

### □ 문제점 & 질의

-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상임위원회 관련 경비 집행지침’에는 용역과제의 선정기준·대상·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상임위원회 정책연구개발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정책개발비는 ▲당해연도 예산액을 각 상임위원회에 균등배분(1개 상임위원에 4,000만원) ▲1개 과제당 용역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 ▲용역계약은 국회사무처가 정부출연연구소·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기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체결 ▲연구용역수탁자는 연구결과를 해당상임위 간담회·세미나 등에서 발표·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1> ‘정책연구개발비 지급기준’ 위반 현황**

상임위원회 정책개발비 규정	위반 사례	비 고
정책개발비 상임위별 4,000만원으로 균등배분	<b>정책연구개발비 상임위 균등배분 위반</b> - 2005년 : 운영위 7,000만원, 예결위 2억 5,000만원 - 2006년 : 운영위 7,500만원, 정보위 2,000만원, 예결위 2억원	- 2005년 : 기초실 5억원 집행 - 2006년 : 기초실 4억 6000만원 집행
용역계약은 기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체결	<b>법인체결 위반</b> - 2003년도 이후 지금까지 총 54건 개인과 계약	
연구용역수탁자, 연구결과의 해당 상임위 발표·보고	<b>발표·보고 위반</b> - 발표, 보고실적 거의 없음	

(자료출처 : 2006년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 제출 자료)

-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러한 지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회 실·국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아무런 근거규정도 없이 22억원을 집행하였음. 정책연구개발비 지급기준 위반 사례는 <표-1>과 같음.
- 본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정한 지침을 그것도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러한 행태들이 반복되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 기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의원은 정책연구용역과제는 ▲치밀한 기획을 바탕으로 수요조사와 ▲연구용역을 반드시 공고를 통해 실시하고 ▲연구수탁자가 제출한 과제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아울러 사무총장은 ‘상임위원회 정책연구개발비 지급기준’을 매년 위반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근절방안을 강구할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국회 사무처·도서관, 전보제한기간 명시된 규칙 무시하고 3년간 총 45명 인사 단행

### □ 문제점 & 질의

- 국회 인사규칙 제48조는 전보제한기간을 두어 전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이렇게 국회 인사규칙에 ‘전보제한기간’을 명시한 것은 해당 공무원에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것임.

**\*참고자료 <국회 인사규칙> 제48조(전보의 제한)**

- 소속공무원을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
- 단, 위원화·법제·예산정책업무부서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

- 그러나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인사규칙을 무시한 채 전보제한기간을 어기고 최근 3년간 총 45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2004년 21명 ▲2005년 8명 ▲2006년 16명으로, 전보제한을 위반한 이러한 인사는 ‘인사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1> 전보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보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말 현재	합 계
국회 사무처	4명	6명	7명	17명
국회 도서관	17명	2명	9명	28명
합 계	21명	8명	16명	×
총 계	45명			×

(자료출처 : 2006년 국회 사무처·도서관 국정감사 제출 자료)

- 국회 사무처는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가능사유’를 들어 전보를 단행했다고 밝히고 있음. ‘전보제한기간’을 ‘국회 인사규칙’에 명시한 것은 ▲해당 공무원에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주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9가지 ‘전보가능사유’가 ‘국회 인사규칙’에 명시된 것은 동 규칙 제4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보의 제한’ 규정을 무력화시키고도 남는다고 판단됨.
- ‘전보가능사유’로 명시된 ▲1.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 ▲9.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기관장이 원하면 언제 어느 때고 전보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바 이 또한 마찬가지로 판단됨.

**\*참고자료 <국회 인사규칙> ·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가능사유**

1.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과와 담당관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전보
3. 당해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
8.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일반직공무원과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담당관등을 보좌하는 4급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9.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 의원은 기관의 안정을 저해하는 전보가능사유를 대폭 줄이고, 전보의 제한규정을 철저히 엄수하여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사무총장은 전보가능사유 남용에 대한 대책과 근절방안,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출근 가로막고, 민원인 내쫓고  
국회 등록 차량의 62.9%만 주차할 수 있는 국회 주차장**

□ 문제점 & 질의

- 지난 5년 동안 ▲국회 등록차량 ▲국회 직원 ▲국회방문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회 내 주차면 수’는 거의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현재 ‘국회에 등록된 차량’은 3,093대인 반면 ‘국회 내 주차면수(국회 내 주차가 가능한 차량 수)’는 등록 차량의 62.9%인 1,945대 인 것으로 나타남.

**<표-1> 연도별 국회 주차면수 확보 현황**

구 분	국회 내 주차면 수 (단위 : 대)	국회에 등록된 차량 수 (단위 : 대)	직원 수 (단위 : 명)	국회방문자수 (단위 : 명)
2002년	1,641	3,391	2,815	194,391
2003년	1,620	4,071	2,843	232,740
2004년	1,620	4,071	3,062	251,823
2005년	1,620	4,232	3,060	246,823
2006년	A : 1,945	B : 3,093(9월)	3,064	146,460(8월)

(자료출처 : 2006년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즉 국회에 등록된 차량 수(B : 3,093대) - 국회 내 주차 면수(A : 1,945대) = 1,148대가 ‘국회’가 아닌 ‘제2의 장소’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아울러 해마다 국회 직원과 국회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물리적으로 국회에 주차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매년 매일 매시간 국회에서는 '주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이렇다 보니 주차장 관련 민원은 매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4일 국회에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주차관련 민원은 극에 달하고 있음.
- 아울러 출근시간 이후와 점심시간 이후는 국회 직원조차도 국회 내 주차공간부족(만차)으로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함.
- 본 의원은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도입한 '주차관제시스템'이 결과적으로 민원에 민원을 더한 격이 되었다고 생각함.
- 따라서 본 의원은 몇 년간 국회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방치한 국회사무처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아울러 국회후생관 또는 국회 전면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사·분석한 자료는 공개가 원칙이다

### □ 문제점 & 질의

- 국회 예산정책처는 출범 이후 각종 조사·분석보고서, 특별현안보고서 총 118건, 국회의 원 및 위원회가 요구한 조사·분석사항 1,251건을 처리하여,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정작 그 요구사항과 회답은 비공개로 하고 있어, 예산낭비와 비효율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움.
- 국회의원 및 위원회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예산안, 결산, 법률안, 국가재정운용, 그리고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의뢰하는 것임.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관련 내용을 조사·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귀중한 예산낭비와 비효율 그 자체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됨.
- 예산정책처는 ‘조사·분석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제7조 때문에 요구사항과 회답은 비공개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내규는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짐.
- 아울러 본 의원은 예산정책처의 귀중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자료가 매년 수천 건이 공개되지도 않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조사·분석자료 공개 방안과 같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